

이의신청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일자 | 처리기간 60일 |
| 신청인 | 대표자 성명 | 생년월일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
| 이의신청 대상사업 | 사업명(사업목적) | | |
| | 사업자성명(법인명) | | |
| | 사업자주소 | | |
| | 사업소재지 | | |

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

「산지관리법」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, 귀하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**

| | | |
|------|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허가·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, 주민(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), 공장의 소유자·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(서명인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) 1부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-|-----------|

처리절차

